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전화 (02)3707-9615~6/전송 3707-9629
 처리부서 : 공원과(서소문별관 제1동 8층) 담당 : 하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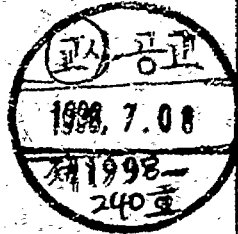
분서번호 공원58215-43)

시행일자 1998.07.8

(제1안)

수신 내부실제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공원녹지기획관	건설	민무담당관 김자필
공원과장		
공원개발과장		
기안	하 제 호	협조

제목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1. 중구 공녹58215-575호('98. 6.1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973-46호('73.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1호('96.11.29)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중구의주로 2가 16-2번지 일대 서소문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3. 천주교 순교탑 지하로 도시가스관이 통과하고, 또한 자원재활용처리장의 계단실과 인접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시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제3항의 경미한 시설변경에 해당하므로,

4.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덧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2부.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사본 1부. 끝.

(제2안)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도시관리과장

제목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보고

1. 건설부고시 제1973-46호('73.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1호('96.11.29)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중구

일부본대조필



고 시(안)

고시번호	1998. 7. 29	제 1998-240호
담당자	박지선	사제관
날짜	7. 29	장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 240호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1973-46호('73.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1호('96.11.29)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중구 의주로 2가 16-2번지 일대 서소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전화:3707-9615)와 중구 공원녹지과(전화:260-1395)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8년 7월 8 일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별항
- 나.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의주로 2가 16-2번지 일대 서소문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보고 합니다.

덧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각 1부 끝

(제3안)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관보게제 의뢰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관보게제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40 호('98. 9. 8)

나. 고시명 :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덧붙임 : 고시문 및 조서 각 2부 끝.

(제4안)

수신 중구청장

참조 공원녹지과장

제목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통보

1. 공녹58215-575호('98. 6.11)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일 것이며,

3.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등 도시계획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